

MCPS 규정/Regulation JHC-RA

교직원의 형사상 체포, 구형, 범죄 소송 처분에 관한 자진 신고/Staff Self-Reporting of Arrests, Criminal Charges, and Convictions

자주 받는 질문

이 규정은 왜 제정되었습니까?

아동과 청소년을 돌보고 교육하는 공교육 기관으로서 우리 교육구는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학습환경을 모든 학생과 교직원에게 제공해주는 높은 수준의 직원을 고용하고 유지할 절대적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교직원이 모든 연방, 주, 카운티 법을 준수한다는 의미입니다. 추가로 Maryland 법은 카운티 교육위원회가 범죄의 유죄가 결정되었거나 유죄를 인정 또는 불항쟁 답변한 개인을 알고 고용 또는 고용 유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고용인 즉 교직원은 고용절차 기간 동안 범죄기록과 아동보호 서비스에 관한 신원조사를 완수해야 합니다.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학습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MCPS)는 [Regulation GCC-RA, Staff Self-Reporting of Arrests, Criminal Charges, and Convictions](#) 를 직원으로 고용되면, 모든 직원은 규정에 따라 아래에 명시한 모든 범죄의 체포, 기소를 학교에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MCPS Policies and Regulations 웹사이트 페이지](#)와 [MCPS Employee Code of Conduct](#)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모든 직원이 이 체포, 구형, 범죄 소송 처분을 보고해야 합니까?

예. MCPS 에 고용된 직원(풀타임, 파트타임, 가채용, 정규채용, 임시 또는 계절 채용, 보조교사에 상관없이)은 MCPS Regulation GCC-RA(아래의 리스트 참조)에 명시된 어떠한 위법행위로 체포 또는 구형을 받았을 경우, 이를 자진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MCPS 에 고용된 직원은 체포 또는 구형에 따른 범죄 소송절차를 Office of Employee Engagement and Labor Relations (OEELR)의 Department of Compliance and Investigations (DCI)에 보고해야 합니다.

체포를 언제 보고해야 하며 어떻게 보고합니까?

MCPS 에 고용된 직원(풀타임, 파트타임, 가채용, 정규채용, 임시 또는 계절 채용, 모든 직원은 범죄에 따른 체포 또는 구형을 **7 업무일**(MCPS 사무실 업무일) 이내에 DCI 에 이를 자진 보고해야 합니다. 교육구 직원은 DCI 에 자신이 또는 법적 대리인을 통해 이 규정을 충족해야 합니다. [MCPS Form 230-41, Staff Self-Reporting of Arrests, Criminal Charges, and Convictions](#) 를 사용하면 보고절차가 수월해집니다. 서류를 작성한 후, DCI 사무관만이 볼 수 있는 DCI 이메일 selfreport@mcpsmd.org 로 이메일합니다. 이 보고는 DCI 에 전화로 또는 우편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불가항력적인 경우, 7 일 업무일 이내의 보고 기간에 예외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DCI 에 무엇을 보고해야 합니까?

다음에 관련된 모든 범죄의 체포와 형사고발 및 범죄 행위에 따른 소송 처분 모두를 보고해야 합니다. ¹

1. 메릴랜드 형법 조항(Criminal Law Article of the Maryland) Code §3-307 또는 §3-308 에서의 3, 4 도인 성범죄와 다른 주법의 위반이 Maryland 에서 Criminal Law Article §3-307 또는 §3-308 로 간주되는 경우입니다.
2. 아동 성학대에 대한 Maryland 주 범죄법 조항(Criminal Law Article §3-602)을 위반하거나 다른 주법에서의 해당 조항을 Maryland 주에서 위반한 경우, Criminal Law Article §3-602 하의 아동 성적 학대로 간주합니다.
3. 폭력 범죄에 대한 Maryland 범죄법조항(Criminal Law Article) §14-101 를 위반하거나 Maryland 주에서 다른 주의 §14-101 에 해당하는 법을 위반한 경우. 폭력 범죄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1) 유괴 (2) 1 급 방화 (3) 납치(4) 살인, 고의적이지 않은 살인은 예외 (5) 신체상해 (6) 불구 (7) 살인 (8) 강간 (9) 강도 (10) 차량탈취 (11) 차량탈취 의도 (12) 1 급 성범죄 (13) 2 급 성범죄 (14) 중죄, 폭력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권총의 사용 (15) 1 급 아동학대 (16)미성년자 성적 학대 (17) 다음에 명시된 범죄에의 가담 또는 가담 시도 (1)-(16)에 명시된 범죄(18) 범죄법(§3-315 of the Criminal Law Article) 에서의 아동에게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행위 (19) 1 급 공격 (20) 살인을 의도한 공격 (21) 강간을 의도한 공격 (22)도둑질을 의도한 공격 (23) 1 급 성범죄를 의도한 공격 (24) 2 급 성범죄를 의도한 공격을 포함합니다.

이 보고는 마약 또는 규제 약물 배부에 따른 처벌과 함께 체포와 구형이 적용됩니다.

Montgomery 카운티 외에서 일어난 체포도 보고해야 합니까?

예. MCPS 직원은 MCPS Regulation GCC-RA 에 준거하여 장소에 상관없이 체포, 구형, 유죄선고를 보고해야 합니다.

이전에 있었던 범죄혐의도 자진보고를 해야 합니까?

이 자진 신고 요건은 2016년 10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범죄행위의 조치를 포함한 형사상의 체포, 구형에만 적용됩니다.

경찰이 이미 MCPS 에 이를 알린 경우에도 범죄혐의를 자진 보고해야 합니까?

예. 이 규정에 따라, 직원은 MCPS가 Montgomery County Police Department 또는 다른 정보나 출처로부터 체포 또는 형사고발에 관한 안내를 받았는지에 상관없이 DCI에 직접 자진 신고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¹범죄에 관한 특정 정보는 Section 6-113 of the Education Article of the Annotated Code of Maryland 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체포, 구형, 유죄선고를 신고한 후 어떻게 됩니까?

직원이 DCI에 자진신고 양식, 전화보고 또는 우편 보고를 제출함에 따라, OEELR은 이 사건의 앞으로의 검토를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OEELR에서 내부조사를 실시할 경우, 가능한 한 지체없이 직원에게 이를 알립니다. 검토를 위해 DCI는 직원이 기소장과 범죄 소송에서 받은 처분의 사본을 포함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부조사는 Montgomery 카운티 경찰국(Police Department)과 Montgomery 카운티 협력기관과의 양해각서와 모든 해당 법과 협력의 동의에 지정되어 있는 보호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만약 혐의가 아동이나 취약한 성인의 학대나 방치에 관련될 경우, 내부조사는 [MCPS Regulation JHC-RA, 아동 학대와 아동 방치의 신고와 조사\(Reporting and Investigating Child Abuse and Neglect\)](#)에 따라야 합니다.

직원은 직원의 구형을 기다리는 동안 행정적 휴직(administrative leave)을 받게 됩니까?

재판절차 결과 및 내부조사 결과가 계류 중일 경우, MCPS는 직원을 공무휴직(administrative leave) 또는 형사고발, 체포, 유죄선고와 직원의 MCPS에서의 업무와 책임이 결합 또는 연결되어 있는지 또는 주장하는 행위에 대한 조사, 영구적인 주장하는 행위 여부에 따라 고용인이 직무를 계속하는 것이 학생이나 교직원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결정하여 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내부조사나 징계절차는 연방, 주법과 교육위원회 정책, MCPS 규정 및 MCPS와 단체협상협의 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만약 MCPS가 내부조사를 실시할 경우,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직원의 자진 보고에 대한 첫 검토에 따라 내부조사를 실시하게 될 경우, OEELR 사무관은 직원에게 이를 적절한 시기에 알립니다. 직원은 이 절차에 동참하도록 권고를 받게 됩니다.

체포에 관해 제 수퍼바이저에게도 알려야 합니까?

아닙니다. 이 규정에 따라, 직원은 MCPS가 Montgomery County Police Department 또는 다른 정보나 출처로부터 체포 또는 형사고발에 관한 안내를 받았는지에 상관없이 DCI에 직접 자진 신고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직원이 수퍼바이저에게 알리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만 직원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 수퍼바이저는 내 행동에 대해 OEELR에서 연락을 받게 됩니까?

체포와 형사고발 및 행동처분에 관련된 모든 정보는 이 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대로, MCPS 직원의 자진신고는 DCI에 비밀을 유지하며 보관해야 하며 아래에 설명한 바와 같이 내부 조사가 필요하게 되어 이를 위한 목적으로 또는 법이나 법원명령에 따라서만 자료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직원에 대한 처분이 진행되는 동안, 행정적 휴직에 처해지는 등의 예와 같이 어떤 경우에는 필요한 추가사항에 따라 수퍼바이저에게 알릴 수도 있습니다.

만약 체포, 구형, 유죄선고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규정에 따른 체포, 구형, 유죄선고를 보고하지 않은 직원은 일반 계약과 정당한 법 절차에 따라 최대 해고를 포함한 징계조치를 받게 됩니다.

내가 체포되었다면 내 직업을 잃게 됩니까?

Maryland 법은 특정 범죄 구형에서 유죄를 받은 개인이 학교에서 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MCPS 는 개인의 구형, 체포 자진 보고를 유죄인 것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DCI는 적절한 후소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직원은 자신의 노조 대표 또는 개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기 위해 연락해야 합니다.

만약 직원이 자진 보고의 절차를 따르지 않을 경우, 수퍼바이저가 직원의 체포를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까?

MCPS Regulation GCC-RA 에 따라, 구형 또는 유죄선고에 직면한 사람이 DCI 에 보고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수퍼바이저가 체포에 관해서 알고 있을 경우, 직원이 이를 보고해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도록 해야 합니다. 추가로, 아동학대 또는 학교 소유지에서의 마약과 약물 사용 등과 같이, 주 또는 연방법, 교육위원회 정책, MCPS 규정에서 요구하는 다른 신고 사항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규정에 관하여 또는 MCPS 에 보고해야 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질문은 어디에 문의해야 합니까?

직원의 규정에 따른 책임에 관한 질문은 DCI로 문의하십시오. 직원의 노조 대표와의 상담 및 또는 개인 변호사에게 이 사건에 관한 자문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연락처:

Department of Compliance and Investigations
Office of Employee Engagement and Labor Relations
Carver Educational Services Center (CESC)
850 Hungerford Drive, Room 55
Rockville, Maryland 20850
전화번호: 240-314-4899
이메일: selfreport@mcpsmd.org